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속결격 사유 확대〉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38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상속결격 사유 확대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현행 「민법」상 상속 및 상속결격제도 개요	4
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 른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관련 논의 경과	8
라.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
2. 관계기관 의견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9.

(3)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Ⅲ. 검토의견

1. 상속결격 사유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을 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 및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직계존속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100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第1004條(相續人の 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該當한 者は 相續人이 되지 못한다. 1. ~ 5. (생략) <u><신설></u>	第1004條(相續人の 缺格事由)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u> <u>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u> <u>나. 유기 또는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u> <u>다. 피상속인을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경우</u> <u>라.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u> <u>마.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경우</u> <u>바.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u> <u>7. 제924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u>

나. 현행 「민법」상 상속 및 상속결격제도 개요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한 후(상속인 확정), ② 상속인의 성별·피상속인과의 관계·혼인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균분하는 “균분상속제도”를 따르되 보충적으로 배우자 가산,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하고 있음(상속재산 분배).

첫째, 상속인 확정의 경우, 현행 「민법」 제1000조¹⁾와 제1003조²⁾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1순위),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2순위), ③형제자매(3순위), ④삼촌·고모·외삼촌·이모·사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됨. 다만,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이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므로³⁾ 대습상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속결격자에 갈음하여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함.

둘째, 상속재산 분배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을 균분(均分)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민법」 제1009조제1항), ①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된 상속분을 지급하고(「민법」 제1009조제2항)⁴⁾, ②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함(「민법」 제1008조의2)⁵⁾.

3)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5)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민법」의 상속결격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제1004조에서는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등의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러한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의 친족인 법정상속인의 상속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수단인바,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음⁶⁾.

첫째,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됨.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결격에 대한 주장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6) 윤진수, 「주해상속법(제1권)」, 박영사, 2019, 1117~118면.

할 수 있음.

둘째, 상속결격은 대습상속 사유이므로 대습상속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속결격자에 갈음하여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하고⁷⁾, 기여분이나 유류분은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상속결격자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없고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갖지 못함⁸⁾.

셋째, 상속결격자의 상속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민법」상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와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 역시 무효로 법적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 따라서 상속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취득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유효하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

7)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8) 민유숙, 「주식 민법(상속)」,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7. 169면.

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관련 논의 경과

(1) 제21대에서의 논의 경과

제21대 국회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제출되었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제출된 관련 개정안]

방식	개정안 (의안번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	세부 절차
상속인의 결격사유 추가	서영교의원안 (2100070)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효력 상실 ◦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속이 무효임을 주장 가능
	이태규의원안 (2109874)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 ◦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자	
	윤재갑의원안 (2122638)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피상속인을 유기·학대 한 자	
	민홍철의원안 (2105118)	◦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 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명수의의원안 (2107619)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 ,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	
상속권 상실선고	양정숙의원안 (2113279)	◦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913조에 따른 보호·교양의무 이행을 해태한 경우	◦ 법정상속인 등 청구권자가 청구기

방식	개정안 (의안번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사유	세부 절차
도입	박재호의원안 (2103257)	◦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신영대의원안 (2101386)	◦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학대, 유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 사이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고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상속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때	
	정부안 (2110864)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녀, 부부, 직계혈족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정점식의원안 (2122898)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결격의 확인	서영교의원안 (2108076)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 법정상속인 등 청구권자가 1년내 가정법원에 상속결격의 확인을 청구

이와 같이 발의·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①현행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 범죄 유형 등을 추가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과 ②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었음.

위 법률안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는 총 3차례 법안심사소위(2023년 8월 31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5월 7일)를 거쳤는데,

당시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게 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법정 상속인의 상속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상속결격사유에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 중대범죄를 추가하기 보다는 법원이 사건별 판단을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전체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음.

(2) 제22대에서의 논의 경과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제21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영교의원안⁹⁾이 재발의되었고, 유사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성원·정점식의원안¹⁰⁾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논의하였는데, 제21대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 결과와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¹¹⁾이 마련되었고,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7.) 및 본회의(2024. 8. 28.)를 통과하였음¹²⁾.

9) 서영교의원안(의안번호 제2200064호)

10) 김성원의원안(의안번호 제2200408호), 정점식의원안(의안번호 제2202538호)

11) 법제사법위원장(의안번호 제2203266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라.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을 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 및 친권의 상실 선고¹³⁾를 받은 직계존속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상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내지 범죄행위를 범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 제한과 관련하여 상속결격사유를 추가할 것인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당시 상속결격사유에 상해나 폭행 등의 죄를 추가한 안¹⁴⁾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결격사유인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의 위법성의 정도와 상속결격사유의 확정성(반복불가)을 고려할 때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¹⁵⁾,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한 안¹⁶⁾에 대하여는 친권 상실사유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13)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118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874호)

15) 법원행정처 의견[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24. 5.) 참조]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미성년인 시기에 가족관계 협동관계를 파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친권상실을 일률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상속권까지 상실시키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⁷⁾이 제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국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최근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2024. 8. 28.)하였는바,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874호)

17) 법무부 의견[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24. 5.) 참조]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100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해 등’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권 상실신고제도(제1004조의2)와의 사유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한 직계존속을 상속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직계존속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상실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상속권상실선고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유연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